PL정보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법규(2)

-제품품질법(산품질량법)-

1993. 2. 22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채택, 1993. 9. 1 시행
2000. 7. 8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회 회의수정, 2000. 9. 1 시행

〈지난호에이어〉

제35조(판매금지제품)판매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폐기 및 판매정지를 명한 제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및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6조(제품의 표시)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시는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제37조(원산지,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 금지)판매자는 원산지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되며,타인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위조또는도용해서는아니 된다.

제38조(허위의 품질표시 금지)판매자는 인정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또는도용해서는아니 된다.

제39조(규격유지 의무,부정표시 금지)판매자는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이물을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혼입해서는아니 되며,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열등품을 우량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여서는아니 된다.

제4장 손해배상

제40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①판매자는 판매한 제품에 다음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교환,반품의 책임을 져야한다.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1. 제품이 본래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명기되어 있는 제품표준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3. 제품의 설명,실물견본 등의 방법으로 표명된 품질상황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②판매자가 전항의 규정에 기하여 수리,교환,반품,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에 그것이 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또는 판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기타의 판매자(이하 '제품공급자'라 한다)에게 속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제조자,제품공급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③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교환,반품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조자간이나 판매자간 또는 제조자와 판매업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약정에 기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사유)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인신 또는 결함제품 이외의 다른 재산(이하 '다른 재산'이라 한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②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의 하나를 증명하면 전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제품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
2.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3.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42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① 판매자의 과실에 의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인신 및 결함제품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판매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②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제조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거나 결함제품의 공급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경우,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43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인신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제품의 제조자는 제품의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있다.

제44조(배상책임의 범위)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

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휴직에 의해 감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한다.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나아가 장해자의 생활보조용품비, 생활보조비, 후유장해배상금과 함께 그 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장례비용, 사망배상금 및 사망자에 의해 생전에 부양받던 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②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평가하여 배상하여야한다. 피해자가 이로써 기타의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45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책임기간)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제품이 최초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만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명시된 안전 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결함의 정의) 본법에 말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에 인신이나 다른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품에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는 경우 그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7조(품질분쟁의 해결) 제품의 품질에 의해서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전원이 중재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제48조(분쟁해결의 품질검사)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은 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제품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관련제품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있다.

제5장 벌 칙

제49조(결함제품의 제조, 판매)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제조 및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판매를 했거나 미판매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치와 같은 금액이상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규격의 허위표시) 제품 중에 이물을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열등품을 우등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인 경우 제조 및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 가치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제조금지 제품의 제조, 판매) 국가가 명문으로 금지를 명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나아가 국가가 명문으로 제조금지 및 판매금지를 명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의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 가격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나아가 인정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4조(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시위반) 제품의 표시가 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한다. 포장이

있는 제품의 표시가 본법 제2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제조, 판매정지를 명하고, 함께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5조(판매금지제품의 판매에 관한 처벌경감사유) 판매자가 본법 제49조 내지 제53조에서 판매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당해 제품이 판매금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나아가 그 공급처를 사실 그대로 설명한 경우에는 경한 처벌을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품질감독검사의 거절) 법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제품품질감독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한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절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고 시정하도록 명한다.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7조(검사결과의 위조) ① 제품품질의 검사기관, 인정기관이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위조의 증명을 발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단위를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의 직접책임자를 1만원 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정자격을 취소한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② 제품품질의 검사기관, 인정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사실과 다르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적절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③ 제품품질의 인정기관은 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이것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그 인정표시의 사용자격취소를 하지 않고 제품이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그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사회단체, 사회중개기관에 의한 승낙, 보증) 사회단체, 사회중개기관이 제품품질에 대하여 승낙, 보증을 하고 당해 제품이 그 승낙, 보증의 품질요구에 합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9조(허위의 광고) 광고에 있어서 제품품질에 대하여 허위선전을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규정에 기하여 법적인 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위조물품 제조에 사용한 물품의 몰수) 제조자가 본법 제49조, 제51조에 규정하는 제품 또는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인 제품의 제조에 전용한 원재료 · 보조재료, 포장물, 제조용구는 몰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61조(판매금지제품에 대한 운수, 보관, 저장 등의 제공) 본법에서 제조, 판매의 금지가 규정된 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운수, 보관, 저장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또는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인 제품을 위해 위조품 제조기술을 제공한 경우, 운수 보관, 저장 또는 위조품 제조기술의 제공에 관한 수입의 모두를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소득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서비스업에 있어서 판매금지제품의 사용)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본법 제49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판매금지제품을 경영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를 명한다. 그 사용제품이 본법에서 규정하는 판매금지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에 사용한 제품(사용을 마쳤거나 미사용한 제품을 포함)의 가액에 기하여 본법의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3조(물품의 은닉 · 이전 · 환금 · 훼손)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봉인하고 압류한 물품을 은닉 · 이전 · 환금 · 훼손한 경우, 은닉 · 이전 · 환금 · 훼손된 물품의 가액과 같은 금액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64조(민사책임과 벌금, 형사책임의 우선순위)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벌금, 형사벌금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 그 재산이 동시에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65조(위법행위에 대한 가담) 각급 인민정부의 직원 및 기타 국가기관의 직원이 이하에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 · 방임한 경우

2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제조, 판매활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누설하고 당해 당사자가 조사 · 처분을 면하도록 협력한 경우

3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품의 제조, 판

매에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조사·처분하는것을방해및간섭하고심각한결과를발생시킨경우

제66조(감독·발취검사의 규정위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제품품질의 감독·발취검사에 있어서 규정의 수량을 넘어 견본을 채취하거나 피검사인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징수한 경우 상급의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감독기관에 반환을 명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67조(경영활동에 대한 관여) ①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의 국가기관이 본법 제25조의 규정을위반하여 제조자의 제품을 사회에 추천 또는 제조감독, 판매감독 등의 방법에 의해 제품의 경영활동에 관여한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는 경우는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한다.

② 제품품질검사기관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는 경우는 몰수하고, 위법수입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그 품질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68조(직권남용)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원이 직권의 남용, 직무태만, 정실에 의한 부정행위를 행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한다.

제69조(직무집행방해)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원이 법에 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방해한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절, 방해한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기하여 처벌한다.

제70조(행정처벌의 결정기관) 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허가증 취소의 행정처벌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결정하고 본법 제49조 내지 제57조, 제60조 내지 63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권의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처벌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몰수한 제품의 처리) 본법의 규정에 기하여 몰수한 제품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기하여 폐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제72조(제품의 가액의 계산) 본법 제49조 내지 제54조, 제62조,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가액은 위법하게 제조, 판매된 제품의 표시가격에 의해 계산한다. 표시가격이 없는 경우, 동종의 제품의 시장가격에 기하여 계산한다.

제7장 부 칙

제73조(군수품의 품질관리규제) ① 군수공업제품의 품질감독관리규칙은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핵시설 및 핵제품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시행일) 본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상권)중에서, 중소기업청, 2003년